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양 삼 승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I. 서 론

1. 반박보도청구제도(언론중재제도)의 발전과정

(1)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에 관한 한 1981. 1. 1.은 특별한 날이다. 즉 위 날부터 시행된 언론기본법(이하 언기법이라 한다)에는 공정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 보도대상이 된 자의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구의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실현하는 장치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설이 규정되었다. 종래 우리나라의 법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약간은 생소한, 「반론권」의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반론권 제도의 도입은 분명 혁신적인 조치였으나, 반면에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적절히 이용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때문에 반론권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언론중재제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2) 그리던 중 1987 년의 이른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위 언기법 제정 당시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문제 삼아 위 법을 폐지하면서, 위 법에 규정되어져 있던 반박권의 제도는,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고 한다) 및 「방송법」의 해당 개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1987. 11. 28).

그리고 위 수용과정에서 약간의 발전적인 수정이 행해졌는 바, 이는 다음의 2 가지이다. 즉 첫째는, 정보보도청구권과는 별도로, 범죄사실보도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보도된 자가 무죄 등의 판결을 사후에 받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의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둘째,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출석의무와 불 출석시의 제재로서 합의간주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2. 개정내용의 기본방향 설정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반론권 제도는 우리의 내부에서 자생적 필요성에 기하여 스스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계기에 의하여 돌발적 타의적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

제도를 이제 10 여년 동안 시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아오면서 그 나름의 성과도 올렸으며, 때로는 제도의 미비 내지는 운영의 미숙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간 10 여년을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반론권 제도, 이와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명제 앞에서, 필자는 우리의 현재의 실정하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2) 즉 1981. 1. 1. 언기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의 10 여년 동안은 반론권 제도에 관한 제 1 세대의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위 기간은 우리에게 생소하였던 반론권 제도를 받아들여, 그 내용의 이해 및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간이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언론중재제도를 설치 · 정비하고, 외국의 이론 및 실무 예를 수집 습득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3) 그러나 그 동안 10 여년간의 시행경험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적합한, 우리의 몸에 맞는 반론권 제도를 정착 ·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행기간 중에 겪었던 법규정의 미비, 시행착오, 문제점 등의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여기에 우리의 실정 · 의식구조 등을 감안한 비판의식을 가미하여,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 · 언론중재제도를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상당기간은 반론권 제도에 관한 제 2 세대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4) 예상컨대, 위 제 2 세대의 기간이 끝나면, 즉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가 정착되고, 반론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잡게 되면, 그 이후의 기간은 「언론의 공익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농도 짙은 제도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언론중재제도의 제 3 세대의 기간으로서, 위와 같은 임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 위상 등을 재검토하여 그야말로 언론에 관한 공익적인 모든 업무를 위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5) 위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하여야 할 작업은, 반론권 제도의 제 2 세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입장에서는,

① 반론권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문제로 부각되어온 점들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② 나아가 반론권 제도의 토착화를 위하여, 과거의 형식 논리적이고, 지나치게 입법 기술적인 규정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평균 정도의 국민이면 누구나 법 조문만을 읽고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방대한 내용을 가지는 기본법의 분야보다는, 반박보도청구권과 같은 비교적 특수하고 분야가 한정된 법률의 경우에는 훨씬 실현하기도 용이하고 또한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6) 이하 필자가 본고에서 위와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필자나름의 개정안을 마련해 보았는바, 그 과정에서 박용상 부장판사가 1991. 8. 22. ~ 24. 언론중재위원회 주최의 1991 년도 세미나논문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의 내용이 크게 참조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위 논문은 거의 완벽하게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입법례까지 섭렵하고 있어, 본 고에서는 위 논문의 내용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는 부분(이 부분은 필자의 표현법으로는 중재위의 제 3 세대의 기능이다)은 시기상조의 느낌이 있어 제외되었고, 나머지의 부분에서는, 세부적인 점에서 필자와 다른 견해를 취한 부분은 필자 나름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3.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

반론권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언기법에 「정정보도청구」라는 이름으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이 망라하여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7년 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언론매체의 종류에 따라, 위 규정이 각각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 나누어 규정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론권 제도의 규정은 그 자체로서 통일된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서 매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론권 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방송에 관한 법률의 본래적인 규정 내용과도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위 제도가 위와 같은 법률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규정되는 것도 적절치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반론권 제도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형식 등을 재정비하는 마당에서는, 위 제도를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을 만들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독립된 법률의 명칭으로서는 「반박보도청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할까 여겨진다(이는 물론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반론권」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이다).

II. 「반론권」 제도에 관한 명칭

현행의 정간물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의 제도가 원래 서구의 반론권 제도를 입법화한 것임은 여러 논설이나 대법원의 판결(1986. 1. 28. 85 다카 1973 및 1991. 1. 15. 90 다카 25468)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9. 16. 89 헌마 165)에 의하여서도 거의 이론 없이 인정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 1. 1. 언기법이 제정된 이래 그리고 1987년 정간물법으로 개편된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권리의 명칭은 계속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다. 이와 같이 권리의 실질과 명칭이 서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언기법의 시행초기에는 특히 법조인이 아닌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현재에 이르러서는 위 권리의 실질이 사법부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밝혀진 이상 이에 상응하는 명칭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명칭으로는 반론권, 반박권, 반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론」이라는 용어는 견해에 따라서는 「의견」진술에 대한 반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소지가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위 1986. 1. 28.자 대법원판결이 친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권리의 명칭은 정식으로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하고 약칭으로는 「반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까 생각된다.

III. 반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현행 정간물법 제 16 조 제 1 항에는 위 반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개별적 관련성」의 표현방법

(1) 반박보도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보도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이를 일상적 · 상식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것」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법률규정에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프랑스 법에서는 보도에서 「지명」(nommé) 또는 「지칭」(designé)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독일의 여러 주의 언론법에서는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련된」(betroffen)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오스트리아의 언론매체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일반적으로가 아니게」(nicht bloß allgemein),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개별적으로」 「관련된」(betroffen)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다.

(2) 위 여러 가지의 표현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피해를 받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보도에 의하여 「인격적 또는 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위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의 제도는, 소위 반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이외에 따로 원상회복방법의 하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태도는, 위 제도의 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뿐 아니라, 종래의 법원의 실무에서 나타나 해석론과도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피해를 받은」이라는 용어는 가장 적절치 못한 용어법으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그렇다면 어떠한 표현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여러 방법이 가능할 것이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별적으로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함으로써, 첫째 인격적·재산적 법익의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나타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둘째 사실보도에 의하여 단지 일반적으로 즉 포괄적으로 막연히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역시 표현될 수 있어서, 비교적 명확하게 본래의 반박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이 나타내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사실적 주장」(보도)의 의미 및 내용(외연과 내포)의 표시 여부

(1) 사실적 주장의 의미(외연)

반박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아가 가치판단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서까지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결론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사실적 주장에 한정하는 현행법의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사실적 주장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 내지는 외연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학설이나 판례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리라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으나,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법률 자체에서 명확히 규정해 둌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 국민이 법률 자체의 규정만으로써도 반박보도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법률에 정의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이 참고로 될 수 있는 바, 위 규정은 반박보도청구가 허용되는 언론보도는 「그 성질상 정당성(Richtigkeit)과 완전성(Vollständigkeit)의 심사가 가능한 진술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wesentliche Aussage)에서 보아, 단지 개인적인 의견의 표현, 가치평가 또는 타인의 미래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을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위 규정형식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의견표현, 가치평가, 경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백히 하는 데에 그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사실적 주장의 내용(내포)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 주장이 의미하는 바 내용을 좀더 상세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문제로 되는 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련되어 반박보도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서는 크게 나누어 2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는 사실적 주장 내지는 보도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진실에 반하여 잘못되어 있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사실적 주장 내지는 보도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좀더 포괄적 전체적으로 보면 불완전하여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면, 진실에 반하는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반박보도의 필요가 생길 수 있는 2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법문에 명백히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친절한 입법태도라고 보여진다.

<제안내용>

제 조(반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 사실적 주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② [제 1 항에서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그 성질상 정당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진술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의견의 표현, 가치평가 또는 미래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을 말한다].

IV. 반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현행 정간물법의 규정에 의하면 반박보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5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체계상으로는 위 5 가지의 경우가 여러 개의 조문에 산재되어 있어 통일적인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다.

즉 ①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②반박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및 ③상업적인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위 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고 ④반박문에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 4 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⑤공개회의와 공개재판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는 제 6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법의 규정상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이 어느 편에 있는지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그 동안 정간물법이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법원의 실무상 밝혀져 왔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국민의 법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도 나타나게 되었다.

(2)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포괄하여 한 곳에 묶어 규정하고 아울러 그 사유의 주장 · 입증책임이 언론사측에 있음을 명백히 하며, 실무상 확립되어온, 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는 개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시대상황의 변천에 따라 신축성이 있는 것이므로, 예시적인 나열과 아울러서 다시 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명기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나열할 것인가인 바, 이 점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언론법의 규정이 크게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 법은, ①피해자에게 그 사실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닐 때, ②반박의 대상이 된 보도가 피해자의 주장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이 반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때, ③당해 보도 또는 이와 대등한 다른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반박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때, ④보도 이후 반박이 제기되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의 4 가지를 들고 있다. 위 4 가지의 경우들은 모두 우리 법원의 실무에서도 거의 이론의 여지 없이, 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3) 덧붙여 종래의 규정에서 문제된 것 중의 하나는 광고에 대하여는 반박보도청구를 항상 금지할 것인가 이다. 종래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상업적인 광고<만>」이 아닌 다른 광고 즉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반박보도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경우에 즉 의견광고의 경우에 반박보도가 허용되면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반박보도문은 무료로 게재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견광고의 경우에도 무료로 게재하도록 한다면 언론사의 피해가 야기되어 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명백히 규정하여 의견광고에 대하여는 반박이 허용되고, 다만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4) 다음으로 종래의 이론상, 언론사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보도가 의무 지워진 사항에 대하여는 반박보도청구권이 배제된다고 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도 역시, 위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열거해 두는 것이 친절한 입법태도라고 생각된다.

(5) 끝으로 종래, 위 반박보도청구의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언론사측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의 내지는 항의를 받은 부분이, 경찰·검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한 사항에 대하여도 역시 반박보도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언론사측의 희망사항은, 적어도 국가기관에서(특히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국회 등의 공개회의나, 공개재판에 관한 사실보도와 마찬가지로 반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이었다. 생각컨대, 언론사측의 그와 같은 사정, 즉 그들은 스스로 하등의 취재·조사활동을 한 바 없이 국가기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 반박보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 없이 불이익만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반박보도청구의 제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의 유무를 따져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언론에 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는 그 자체로서 일정의 범위 내에서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언론사측의 위와 같은 항변은 반박보도청구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안내용>

제 1 조(반박보도청구의 금지) 반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하는 때에는 제 조의 반박문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

1. 반박보도청구가 국회,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2. 반박보도청구가 영업적인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 다만, 영업적이 아닌 의견광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게재 및 인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법의 반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반박보도청구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행해진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4. 반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5. 반박문의 보도가 명예훼손 등 범죄로 되거나 타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
6. 가. 반박문의 보도가 반박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때.

나. 반박의 대상으로 한 보도가 반박인의 주장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반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때.

다. 당해 보도 또는 동등한 다른 보도에서 반박자에게 반박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사전에 부여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때.

라. 보도 이후 반박의 제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

마. 기타 반박인이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 때.

V. 반박보도청구권 행사의 기간

(1) 현행법상 반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는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후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 월 이내에 언론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제 16 조 제 1 항). 그 결과 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 18 조 제 1 항).

다음으로 둘째는, 언론사에 청구하지 않고 직접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는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후 1 개월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제 18 조 제 1 항).

(2) 위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 아래서 위 제도를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로, 권리행사기간이 너무 짧지 아니한가의 점이다. 특히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박보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가 공표된 지 14 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지나치게 단기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둘째로,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시점, 즉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기산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문제된 기사가 공표되면, 그 기사에 관련된 자가 기사의 보도를 알았는지와는 무관하게 기간이 진행되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도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도과하여 반박보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한 취지는, 장기간 언론사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고려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양자 사이의 적절한 조화가 요망된다.

셋째로, 권리행사의 기간을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에 바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공연히 국민들로 하여금 권리행사기간에 혼란만을 야기시킬 우려마저도 있다는 점이다.

(3) 그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①권리행사의 기간을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거나 간에 통일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고(그 기간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1개월의 기간이면 적절치 아니한가 여겨진다), ②기간의 기산점을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도에 관련된 자가 그 보도가 공표된 것을 안 때로부터 할 것이며(물론 이와 같이 안 때로부터 하게 되면, 보도에 관련된 자가 언제 그와 같은 보도가 공표되었는지를 알았는지가 항상 문제로 될 것이지만, 이는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되게 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이 하면 언론사가 너무 장기간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위 반박보도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함이 적절할 것이다. 위 일정한 기간으로서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정도로 함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독일에서는 법원에 반론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언론사에 직접 청구를 거쳐야 하는 바, 청구인은 보도가 이루어진 후 지체없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면 반론권은 소멸된다.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시점은 청구인이 「사실상 보도를 인지한 시점」이다. 이 경우 「지체없이」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2주간」의 기간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1980.8.20.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 2주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미흡한」 기간이라고 판시한 이래, 학설·판례는 「일반독자의 기억력이 살아있는 기간」을 표준으로 하여 현실적 필요성(Aktualität)이 존속하는 한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언론사가 그 게재보도를 거부한 후 「법원예의 출소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상 아무런 기간제한이 없으나 상당기간 방치함으로써 원보도의 독자들에게 대응보도를 알게 할 필요성이 소멸되면, 그 이후의 청구소송은 권리의 남용이 된다고 하고 있다.

<제안내용>

제 조(반박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 사실적 주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에게 무료로 그가 작성한 반박보도문의 게재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행해진 후 3월이 경과하면 위 권리는 소멸한다.]

VI. 반박보도청구의 상대방

종래 반박보도청구의 상대방으로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 16 조제 1 항). 즉 위 법의 규정취지는 기업적으로 언론사를 경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발행인」이나 또는 편집상으로 제작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편집인」의 양자 모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고 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동안 반박보도청구제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반박보도청구인은 많은 경우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를 성명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었으며, 나아가 위 규정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언론사인 기업 자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대법원규칙 제 1003 호로 1988. 3. 4.에 공포된 「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3 조는 피청구인으로서, 「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박보도청구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공포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언론매체의 특징이 가능하다면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이론적인 논리를 감안하고, 나아가 대법원규칙의 이러한 규정취지를 받아들여 우리 법의 반박보도청구권의 상대방을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거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기업 중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가능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절차적인 불편함을 제거하여 권리실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함이 적절하리라고 생각된다.

VII. 반박보도문의 내용 및 작성방법

반박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핵심은 반박보도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법은 위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는 「서면으로 작성된 반박보도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시에 권리 행사의 요건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반박보도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의 4 가지가 문제로 된다.

1. 제 목

반박보도문에 제목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보도가 제목을 붙여 독자의 관심을 끈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제목을 붙여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무기대등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반박문」 또는 「반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항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보도의 제목에 이의 대상인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사실상의 주장이 포함된 내용의 제목을 반박문에도 첨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반박문의 제목이, 마치 언론사에 의한 정상적인 편집부문의 기사라든가 또는 독자투고의 게재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원보도의 표시

반박문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내용의 원보도에 대한 것인지를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원문보도가 게재된 판, 날짜 및 그 면수와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기사의 대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개괄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반박문의 내용

통상적인 경우의 반박문의 작성방법 내지 그 내용으로서는…… 한 원문보도가 「거짓이라거나」, 「진실이 아니라거나」 하는 식으로 표시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한 사실을 보충해서 주장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반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와 다른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는 데에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이는 반박보도청구권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므로 반박보도문의 내용은, 이의의 대상인 원문보도의 주장과 「관념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와 같은 반박문의 내용을,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① 원문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대립적사실」이 주장되는 경우와 ② 원문보도가 불완전하여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사실」이 주장되는 경우와 ③ 원문보도에 내재하는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사실」 및 ④ 반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실」이 주장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반박문은, 그 성질상 반박보도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그 게재를 청구하는 것이지, 결코 언론사가 원문보도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여 이를 정정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작성자는 어디까지나 반박보도 청구인 자신이다. 따라서 반박문의 말미에는 반드시 「반박보도 청구인」 000 또는 「작성자」 000 라는 식으로 반박보도 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반박문의 크기

반박문의 크기에 관하여, 현행법은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16 조 제 5 항).

그러나 반론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우선 원문보도와 의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괄적 · 요약적으로라도 반복하여야 하며, 더욱이 원문보도의 내용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실을 보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박문의 분량이 원보도보다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수」에 따른 수적인 기준만으로 이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원칙적으로 「원보도와 관념적인 연관성을 갖는 범위 안에서 반박의 진술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반박문의 자수와 크기가 원보도의 크기와 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제안내용>

제 조(반박보도문의 내용 등) ① 반박보도문에는 「반박문」 기타 원문보도의 제목에 상응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일 수 있다.

② 반박문의 내용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사실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상의 진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실상의 진술에 국한된다.

③ 반박문의 끝에는 작성자로서 반박보도신청인을 성명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반박문은 이의 대상인 원보도와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범위 안에서 제 2 항의 진술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반박문의 크기와 자수가 이의 대상인 사실보도의 크기와 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본다.

VIII.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위 내지는 권한

1. 문제점

반박보도청구권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박보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언론기본법 제 51 조 제 1 항, 정간물법 제 19 조 제 1 항). 이와 같은 제도는 반론권 제도가 일반화되어있는 서구의 어느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입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제도를 일시에 도입함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를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 이를 바꾸어 말하면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이와 같은 언론중재제도를 시행해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① 쌍방간의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분쟁해결의 기회를 부여 하게 되고, ②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적인 법관 이외에도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위원 및 독자층의 이익을 대변할 각계의 전문가도 역시 위원으로 참가함으로써 언론 및 피해자의 쌍방을 서로 이해시키는 데에 유용할 수 있으며, ③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제소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상대방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④ 반면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나 소송비용의 부담이 없이 피해의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면에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첫째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기능으로서 언론사와 피해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기능 즉 법률적으로 보면 「조정」(mediation)의 기능만을 가질 뿐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일방적 강제적인 분쟁해결의 결정권한 즉 법률적으로 「중재」(arbitration)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다시 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이는 결국 피해자의 권리실현을 지연시키는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언론현실과 같이 사회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언론사측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측의 정당한 권리실현의 요청에 자의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의 언론중재제도는 오로지 반박보도청구권의 유무 및 그 범위에 대하여만 분쟁의 조정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위 반박보도청구 이외에 따로 손해배상의 청구나 기타 사죄광고의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통상의 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 중의 중복된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강제중재권(mandatory arbitration)의 부여 문제

(1) 당사자간에 생긴 어떤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제 3 자의 개입에 의한 방법으로서 크게 나누어 「중재」 및 「조정」의 제도가 있다.

이 중 중재(arbitration, Schiedsgerichtsbarkeit)의 제도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제 3 자 즉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의 결정권한을 가지게 하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구속되며,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제소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예로서 전형적인 경우가 중재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중재 판정이 있으면 법원에서의 출소가 금지되고(동법 제 2 조),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동법 제 13 조).

다음으로 조정(mediation)의 제도는, 제 3 자인 조정자가 분쟁의 해결에 개입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기능만이 인정될 뿐, 강제적인 분쟁해결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중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2) 강제중재권의 인정 여부

① 이와 같은 중재 및 조정의 의미로부터 보면, 현행의 언론중재제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정」의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정의 권한만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작용밖에는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행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중재권」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중재법에 의한 강제중재의 경우에(상사중재원의 경우와 같이) 중재자가 중재판정을 하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위 법 제 13 조에 규정된 몇 가지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중재의 경우는 위 중재법에 의한 중재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위 중재법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합의」 즉 「중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있음에 반하여, 언론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이와 같은 합의가 사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의 경우에, 위와 같은 의미의 강제중재권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면, 이는 헌법상의 원칙인 「법관의 사법권 독점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언론중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적인 강제중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즉,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부의 심리를 거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중재부는 반드시 중재부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의 「중재결정」을 내리되, 일정기간 내에 쌍방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면 여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만약 어느 한쪽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위 중재결정은 실효하고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3) 위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강제중재권을 부여하되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중재결정은 실효된다는 방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위 이의권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게 되므로 이의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의신청의 결과 중재결정에서 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이의신청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 결과인지를 판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은 마찬가지로 불식하기 어려우므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손해배상명령권 인정 여부

언론중재의 실재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신청인이 반박보도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기타 사죄광고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쌍방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반박보도청구의 문제 이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중재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이 실질적·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명령권까지 부여하여 일괄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단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만을 청구할 경우는 별문제이지만, 언론 침해로 인한 재산적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의 범위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손해배상명령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부의 구성, 심리절차, 결정의 효력과 불복방법, 강제집행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오히려 이 때문에 문제의 본체인 반박보도청구의 문제마저 해결이 지연되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므로, 손해배상명령의 문제는 중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4. 순수한 의미의 「정정보도」 명령권의 인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종래 많은 논설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온 바와 같이, 정간물법에서 규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으로 인정되어온 것이 반박보도청구권의 문제임이 분명하게 된 상황에서는 다시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정보도」의 문제 즉 언론사에 의하여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잘못된 보도가 행해졌을 경우에, 언론사 스스로, 다시 말하여 「언론사의 명의로」 잘못된 보도를 시정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는 보도의 문제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언론보도에 관련된 일체의 구제수단을 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하여 문제의 일괄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앞서 본 손해배상명령권의 부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의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반박보도의 문제를,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중재부의 중재에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박보도는 원문기사의 잘잘못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문기사에 관련된 자가 그의 사실적 주장도 역시 게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의 문제는 이와 전혀 성질을 달리한다. 즉 이는 원문보도의 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서, 만약 그 잘못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언론사 스스로 하여금 그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원문기사의 진실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아야 하고, 그 절차의 진행 역시 엄격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소양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결코 중재부에서 약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정정보도의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박보도청구등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반박보도청구의 내용 및 그 실현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익보호와 정확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 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그 성질상 정당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진술로서 그 본질적인내용이 의견의 표현, 가치평가 또는 미래행위에 대한 경고가 아닌 것을 말한다.
4. 언론사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6.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반박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그 사실적 주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무료로 그가 작성한 반박보도문의 게재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행해진 후 3 월이 경과하면 위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 1 항의 반박보도청구는 발행인, 편집인(방송의 경우에는 편성책임자) 또는 언론사의 어느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도 할 수 있다.

제 4 조(반박보도청구의 금지) 반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하는 때에는 제 3 조의 반박문을 보도할 의무가 없다.

1. 반박보도청구가 국회·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2. 반박보도청구가 영업적인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때, 다만, 영업적이 아닌 의견광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게재 및 인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법의 반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반박보도청구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행해진 사실보도를 대상으로 하는 때.
4. 반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5. 반박문의 보도가 명예훼손 등 범죄로 되거나 타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
6. 가. 반박문의 보도가 반박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때.

나. 반박의 대상으로 한 보도가 반박인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반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때.

다. 당해 보도 또는 동등한 다른 보도에서 반박자에게 반박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사전에 부여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때.

라. 보도 이후 반박의 제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

마. 기타 반박인이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 때.

제 5 조(반박보도청구권의 행사) 반박보도청구권은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의 본문 또는 사본과 보도를 구하는 반박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반박보도문의 내용 등) ① 반박보도문에는 「반박문」 기타 원문보도의 제목에 상응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일 수 있다.

② 반박문의 내용은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사실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상의 진술 또는 오해를 일으킬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진술 및 그 사실보도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실상의 진술에 국한된다.

③ 반박문의 끝에는 작성자로서 반박보도신청인을 성명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반박문은 이의 대상인 원보도와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범위 안에서 제 2 항의 진술을 위하여 필요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반박문의 크기와 자수가 이의 대상인 사실보도의 크기와 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발행인 등의 의무) ① 반박문의 보도청구를 받은 발행인, 편집인(방송의 경우에는 편성책임자) 또는 언론사는 지체 없이 청구인 또는 대리인과 반박문의 제목, 내용 및 크기, 보도할 시기, 보도할 판 및 부위, 활자 크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 후 발행인, 편집인 또는 언론사는 일간신문과 통신 및 방송의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반박문을 보도하여야 한다.

③ 반박문은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함이 없이 이의 대상인 사실보도와 동등한 공표효과를 갖도록 보도하여야 한다.

④ 반박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할 수 없다.

제 8 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방송의 경우는 편성책임자) 또는 언론사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중재신청) ① 반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제 3 조 제 1 항의 기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5 조, 제 6 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술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각 지역 중재 부에서 중재서기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제 10 조(언론중재위원회) ① 반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 인 이상 7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공보처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 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 인을 두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 년으로 한다.
-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중재절차 등) ① 중재는 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그 중재부의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 ②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중재대표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 ④ 제 3 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12 조(강제중재 등) ① 중재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기간 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제 1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7 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결정은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는 제 2 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위 결정을 한 중재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 2 항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 13 조(반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반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12 조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효력을 상실함을 안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 1 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 6 조 및 제 7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 조 및 제 705 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 편집인 또는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 15 조(시행령)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3 장(제 16 조 내지 제 21 조) 및 방송법 제 6 장(제 41 조, 제 42 조)은 이를 삭제한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법학박사), 독일괴팅겐대학연수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저술 : 「가정적 인과관계론」 외 다수
-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부장판사